

---

# 우리나라의 새로운 전파법 체계개편에 관한 연구

윤형득\* · 신현식\*

A study on new radio wave law of system reorganization for korea

Hyung-Duk Yoon\* · Hyun-Sik Shin\*

## 요약

이 논문은 오늘날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새로운 방송·통신 융합서비스의 등장이 본격화됨에 따라 그동안 분리되어 규제된 방송과 통신에 대한 법제도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환경변화에 따른 전파법의 변천사에 대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 Abstract

The dissertation on today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ique development consist according to new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appeared fusion-service in earnest legislation's change about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regulate the while separation. on that score, radio wave law's change on environment change has been lively producing.

## 키워드

정보통신, 주파수, 방송통신, 전파법

## 1. 서론

2008년 2월 새로운 정부를 맞아하며 반세기 이상을 사용해 왔던 전파법의 토대위에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과 함께 2008년은 방송·통신 분야에 있어서 많은 변화가 있었으며, 그 변화의 시작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출범이라고 할 수 있겠다.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그간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로 분산되어 있던 방송통신 관련 기능을 일원화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새로운 정부의 출범과 함께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를 통합하여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

정기관으로서 방송통신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의 독립성을 법으로 보장하기에 이르렀다. 이와 함께 방송·통신 분야의 법제도도 함께 정비되어 가고 있으며, 전파법도 2차례의 개정을 통해 그간의 미비점들을 보완하고 있다. 지난 개정에서는 한정된 공공자원인 주파수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주파수 할당제도를 정비하고, 행정개혁과제 중 하나인 재량행위 투명화에 따라 무선국 허가취소 등의 행정처분사유를 구체화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였다. 주파수할당 심사기준, 취소 요건 등이 법령에 명확하게 규정

---

\* 전남대학교 전자통신공학과

접수일자 : 2008. 12. 20.

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주파수할당 및 할당 취소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고, 무선국 허가취소 등의 행정처분사유를 구체화하여 행정 재량권의 객관성·공정성 확보와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1][2]. 이렇듯 새 시대의 전파법은 2000년 전면 개정 이후 12차례의 개정을 통해 전파자원의 확보, 전파자원의 분배 및 할당, 전파자원의 이용, 전파자원의 보호, 전파의 진흥을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으며, 이로써 전파자원의 단순한 관리법적 성격을 벗어나, 전파자원의 확보 및 전파의 진흥법적 성격을 포함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최근에는 방송과 통신이 융합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응하기 위해 방송통신의 기본적인 사항들을 하나로 통합한 방송통신발전에 관한 기본법의 제정이 추진되는 등 방송·통신 분야의 법제도의 정비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전파법의 개정 논의도 진행되고 있다. 그러므로 국내 전파법의 개편 현황을 살펴보고, 방송·통신 융합에 대응하여 법체계에 대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 II. 우리나라의 전파법 개편과 체계 현황

### 1. 전파관리법의 변천

우리나라의 전파에 관하여 최초로 마련된 법률은 1915년의 무선전신법이다. 무선전신법은 무선을 이용한 통신에 대한 엄격한 통제를 바탕으로 무선통신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었다. 대한민국 건국 후 무선전신법을 대체할 새로운 법률이 요구되어 오던 중 1961년 “전파관리법” 제정을 통해 무선국 허가, 운용 및 감독 등을 중심으로 하는 관리법 성격의 전파법령을 마련하였다. 이 전파관리법 시대에는 통제보다는 전파의 관리라는 측면이 강조되었으며, 전파의 합리적인 관리를 통하여 공공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법

의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무선국 허가 및 감독 등을 중심으로 하는 관리법적 성격을 나타내고 있다[3][4]

전파관리법 시기의 특징은 상업적인 무선 통신과 방송 서비스 도입 이전의 전파관리를 위한 법체계로서 전파자원의 확보나 분배·할당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주로 무선국 허가 및 운용, 검사 및 감독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또한, 전파의 진흥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었으며, 이를 위한 재원확보 방안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후 1971년 개정을 통해 시험전파 발사, 간이한 허가절차, 무선설비의 공동사용, 무선중사자 협회 등의 규정이 도입되었으며, 1981년에는 무선중사자에 관한 규정의 정비가 이루어졌다. 이렇듯 1961년~1991년 이전에는 무선국 허가 및 관리 중심의 전파관리법 성격으로 운영됨에 따라 전파관리법의 체계도 총칙, 무선국 허가, 무선설비, 무선중사자, 운용, 검사, 감독, 잡칙, 벌칙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러한 체계를 유지하면서 허가절차 간소화, 무선중사자 제도 등 개별사항별로 개선이 이루어졌다.

### 2. 전파법 개편

‘80년대 들어 무선통신의 급성장으로 인하여 전파자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였으며, 무선국 개설이 점차 증가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규제기관의 전파관리비용 증가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무선통신 관련 전파이용 기술 개발 및 인력양성 등이 중요해지게 되었다.

이러한 전파이용 환경 변화에 따라 한정된 전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전파이용 기술개발 등 전파진흥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근거 및 재원확보를 위하여 1991년 법 개정을 통해 “전파진흥”을 전파법의 목적에 명확히 규정하고, 별도의 진흥 및 재원 규정 등의 도입으로 진흥법적 성격으로 전환하면서, 법의 명칭도 전파관리법에서 하였다. 이때부터는 전파자원의 유한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법의 성격이 변화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법 개정을 통해 기존의 전파관리법적 성격에서 진흥법적 성격을 포함하였으나, 법 체계의 기본 틀은 무선국 허가, 운용, 검사 및 감독, 보칙 및 벌칙 등의 관리법적 성격을 나타내고 있다. 전파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연구기관 육성, 이용기술의 개발 등을 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향후 무선분야를 선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전파 관리비용의 충당과 아울러 전파진흥의 재원확보를 위한 전파사용료 부과에 근거도 마련하였다. 초기 전파사용료는 모든 무선국을 대상으로 부과하였으나, 공공성, 서비스 제공 활성화 등을 위하여 제도개선이 이루어졌다. 1991년~2000년 이전 전파법은 무선국 허가 중심의 전파관리에서 전파의 진흥을 위한 계획수립, 기술개발, 연구 등의 규정이 신설되었으며, 재원확보 방안까지 마련하였다. 즉 전파법이 관리법적 성격에서 산업진흥법적 성격으로 확대되는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전파법 체계 내에 전파진흥 등의 별도의 장으로 추가되었다.

### 3. 현행 전파법 발달

‘1990년부터 무선통신의 급성장으로 인하여 미국, 호주 등을 중심으로 많은 국가에서 특정 주파수 대역에 대한 이용권 또는 면허를 주파수 경매방식을 통해 이용대가를 부과하는 시장기반의 전파관리 체계를 도입하였다. 즉,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20MHz 또는 30MHz 등의 특정 주파수 대역을 이용하는 것이 필요하며, 주파수의 효율적 관리와 공공자원의 사적인 이용에 대한 대가 환수를 위하여 주파수 이용권 설정 및 이를 할당하는 전파관리 체계가 도입되었다. 국내의 경우도 '90년대 PCS 사업권 부여를 계기로 사업권 이와 주파수 이용에 대한 이용대가를 부과하는 것이 필요하며, 무선통신의 급성장에 대한 주파수 자원의 확보가 중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전파이용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2000년 무선국의 허가·검사 및 감독 등 전파이용질서의 유지를 위한 규제 위주의

체계를 전파자원의 확보·배분·이용 및 진흥 중심으로 개편하는 등 전면적으로 전파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 때 주파수할당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전파이용증·장기 계획 및 전파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또한 우주통신과 관련된 조항들도 신설되어 우주통신 활성화의 기반이 마련되었다. 그리고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전자파인체보호기준등을 정하도록 하고, 무선설비의 효율적 이용 또는 자연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자에게 무선국의 무선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동전화가입자에 대한 전파사용료를 면제하고, 주파수대역 및 전파의 폭등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전파사용료의 부과기준을 정하였다[5][6].

2000년도 전파법 전면개정은 전파자원의 단순한 관리법적 성격을 벗어나, 전파자원 확보 및 전파의 진흥법적 성격을 포함하면서, 전파자원 확보, 배분, 이용, 보호라는 전파관리 선순환 체계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전파자원의 확보를 위한 주파수 회수·재배치 시행 및 손실보상 규정, 주파수 할당 및 주파수 이용권 등의 설정 규정 등은 기존의 무선국 허가 중심의 전파관리 체계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규정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후, 주파수 회수·재배치 보상 및 이의신청, 주파수 임대 허용, 주파수 할당취소 규정 도입 등 지속적인 전파법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 4. 전파법의 체계

전파법은 전파관리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그 내용 및 체계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현행 전파법 체계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파자원의 단순한 관리법적 성격을 벗어나, 전파자원 확보 및 전파의 진흥법적 성격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현행 전파법의 모태인 1961년 전파관리법은 무선국 허가, 운용 및 감독 등을 중심으로 하는 관리법 성격의 전파법령 마련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하였고, 이후 1991년 전파관리법을 전파법으로 개정하면

서 “ 전파진흥”을 전파법의 목적에 명확히 규정하고, 별도의 진흥 및 재원 규정 등의 도입으로 진흥법적 성격으로 전환하였다. 전파이용이 확대되면서 전파의 효율적 배분 및 관리를 위하여 특정 주파수 대역에 대한 이용권을 일정 대가를 받고 부여하면서 전파관리 체계의 변화가 이루어졌으며, 2000년 전파법 개정을 통해 자원확보→배분→이용→보호의 전파관리 선순환 체계와 전파진흥 규정 정비 등으로 자원확보, 관리, 진흥의 법적 성격을 포함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전파법 체계도 총칙, 전자자원 확보, 분배 및 할당, 이용, 보호, 전파 진흥, 무선종사자 보칙, 벌칙으로 구성되어

현재의 법체계가 마련되었다. [7][8]

5. 국내외 전파법의 현황

새 시대는 2000년 전파법 개정 이전의 국내 전파법체계는 무선국 허가 중심의 전통적인 운용 방식의 전파관리 체계를 따르고 있는 일본의 현재 전파법 체계와 유사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에는 전파의 진흥에 대한 별도의 규정과 전파사용료 부과를 통한 진흥재원확보 등의 규정을 두고 있어 일본 전파법체계와 차이를 두고 있다.

표 1. 국내외 전파법 법체계 현황  
Table 1. Korea radio wave law the present condition

| 구분       | 일본  | 국내전파법   |  | 호주  |
|----------|---|---|--|---|
|          | 전파법   | '91년  | 00년 이후   | 전파법   |
| 주요<br>목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장 총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적/정의</li> </ul> </li> <li>· 제2장 무선국 면허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선국 면허(개설)</li> <li>- 면허 유효기간</li> <li>- 간이한 면허절차</li> <li>- 주파수할당계획</li> <li>- 전파이용상황 조사</li> <li>- 무선국 등록</li> </ul> </li> <li>· 제3장 무선설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파의 질/안전시설 등</li> </ul> </li> <li>· 제3장의2 특정무선설비 기술기준적합증명 등</li> <li>· 제4장 무선종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 및 출입검사</li> </ul> </li> <li>· 제5장 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적외 사용금지</li> <li>- 해안국 등 운용</li> <li>- 항공국 등 운용</li> </ul> </li> <li>· 제 6장 감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파수등 변경/검사</li> <li>- 무선국 면허취소 등</li> </ul> </li> <li>· 제7장 이의신청 및 소송</li> <li>· 제7장의2 전파감리심의 회</li> <li>· 제8장 잡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수료/전파이용료 징수</li> </ul> </li> <li>· 제9장 벌칙</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장 총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적(진흥포함)/정의</li> <li>- 전파에 관한 조약</li> </ul> </li> <li>· 제2장 무선국의 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허가/준공검사</li> <li>- 무선국의 허가</li> <li>- 간이한 허가절차 등</li> </ul> </li> <li>· 제32장 무선설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술기준/형식검정</li> <li>- 무선설비 공동사용</li> <li>- 전자파장해방지기준</li> <li>- 무선설비 임대허용 등</li> </ul> </li> <li>· 제4장 무선종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격검정 및 수첩교부 등</li> </ul> </li> <li>· 제5장 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난/김급/안전통신 등</li> </ul> </li> <li>· 제6장 검사</li> <li>· 제7장 감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징금의 부과</li> </ul> </li> <li>· 제7장의2 무선종사자 협회</li> <li>· 제7장의3 전파의 진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파진흥기본계획 등</li> </ul> </li> <li>· 제8장 보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자파장해방지구역 등</li> </ul> </li> <li>· 제9장 벌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파사용료</li> </ul> </li> <li>· 제9장 벌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벌칙/양벌규정 등</li> </ul> </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장 총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적(진흥포함)/정의</li> <li>- 전파자원의 이용촉진</li> </ul> </li> <li>· 제2장 전파자원의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확보/이용효율 개선</li> <li>- 회수재비치/손실보상</li> <li>- 전파진흥기본계획 등</li> </ul> </li> <li>· 제3장 전파자원의 분배 및 할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파수분배/할당</li> <li>- 이용권/이용기간</li> <li>- 재할당/관리대상 등</li> </ul> </li> <li>· 제4장 전파자원의 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선국 허가/운용</li> <li>- 방송국 허가/운용</li> <li>- 우주통신의 운용</li> </ul> </li> <li>· 제5장 전파자원의 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술기준/형식검정</li> <li>- (국제)전파감시 등</li> </ul> </li> <li>· 제6장 전파의 진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파연구/표준화</li> <li>- 인력양성/국제협력 등</li> </ul> </li> <li>· 제7장 무선종사자</li> <li>· 제8장 보칙</li> <li>· 제9장 벌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벌칙/양벌규정</li> </ul> </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장 서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파법의 목적</li> <li>- 정의/적용 등</li> </ul> </li> <li>· 제2장 주파수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파수계획</li> <li>- 전환/마케팅 계획</li> </ul> </li> <li>※ 경매근거 규정</li> <li>· 제3장 무선통신의 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허가 무선통신</li> <li>- 주파수면허</li> <li>- 기기면허</li> <li>- 종별면허</li> <li>- 면허의 등록</li> <li>- 주파수 재할당</li> </ul> </li> <li>· 제4장 일반규제조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표준과 기술기준</li> <li>- 전파발사 위반</li> <li>- 혼신분쟁의 해결</li> <li>- 이용지역의 제한</li> </ul> </li> <li>· 제5장 행정과 집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권한의 위임</li> <li>- 공공조사/권고지침</li> <li>- 인가/집행/수수료 등</li> </ul> </li> <li>· 제6장 보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협정</li> <li>- 벌칙 등</li> </ul> </li> </ul> |

한편, 2000년 전파법 개정을 통해 주파수할당 제도의 도입에 따라 (통신)사업용 주파수에 대한 면허체계를 도입하고 있는 호주와 유사한 법체계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호주는 주파수 이용 유형별 면허 체계가 유사하고, 일반규정, 행정과 집행 및 보칙 등이

국내의 전파법과 유사한 체계로 평가된다. 이는 우리의 전파법이 전통적인 관리방식에서 시장기반의 관리체제로 변화하여 가고 있음을 시사한다. 호주와 같이 시장기반의 주파수 관리체계를 도입하고 있지만, 호주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전파의 진흥 관련 규정은 국내법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표1]은 국내외의 전파법 현황이다.

## 6. 방송통신위원회의 발족

최근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의 기본적인 사항이 방송법, 전기통신기본법, 정보화촉진기본법 등에 분산되어 있어 법률 수요자들이 관련법을 이해하는데 혼란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방송통신 관련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관련부처들과의 혼선이 발생하여 정책추진의 효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방송통신의 기본적인 사항들을 하나의 법률로 통합하여 이러한 혼선을 제거함과 동시에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는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환경에 대응하여 방송통신정책의 기본이념, 국가의 책무, 방송통신의 진흥 및 방송통신 재난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방송통신의 발전 및 국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방송통신발전에 관한 기본법”의 제정도 추진하고 있다. 방송통신발전에 관한 기본법에서는 “방송통신”의 통합 개념을 마련하고, 방송통신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의 기본 이념을 제시하는 한편, 건전한 방송통신문화 창달과 방송통신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원칙 등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방송통신기본계획의 수립, 방송통신기술의 진흥 및 인력양성을 위한 규정, 방송통신발전기금 설치, 방송통신의 기술기준, 방송통신 재난관리 등의 규정도 두고 있다. 하

지만, 이 법이 방송통신 관련 기본법임을 표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송과 통신의 중요한 기초자원인 전파에 관한 언급이 없음은 아쉬운 부분이다. 전파자원 관리의 기본원칙을 정한다든지, 전파와 관련된 선언적인 규정을 포함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파가 방송·통신 관련 정책의 중요한 부분임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한편, 경쟁적 수요가 있는 주파수의 경우 시장기능을 통해 주파수 가치를 산정하고, 무선설비 성능향상 등에 따른 전파이용자 불편 해소와 기업친화적인 선진국형 방송통신기기 인증체계 기반 등을 마련하려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전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기도 하였다. 전파법 개정안에서는 경제적 가치나 경쟁적 수요 등이 높은 주파수 대역은 현행 대가할당방식 외에 가격경쟁에 의해서도 할당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무선국 개설·운용절차 간소화 및 관련조문을 재편제함으로써 무선국개설절차를 정비하였다. 또한 전기통신기본법상 유선기기에 대한 인증관련 조항을 전파법에 통합하여 무선기기와 함께 방송통신기기의 인증으로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방송통신기기의 위해정도 및 인명안전 관련 여부 등을 고려하여 인증유형을 적합인증, 적합등록 등으로 재분류하고 있다. 전파법 개정안의 내용은 시장기반의 주파수 관리정책이 확대되고, 무선국개설절차가 정비되는 등 긍정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으나, 방송통신기기의 관리와 관련된 부분은 유·무선을 포함한 전반적인 방송통신기기에 관한 사항이므로 전파법의 체계에서 규율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는 향후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9][10]

## III. 결론

오늘날 해외 주요국에서는 방송과 통신정보의 융합환경이 조성됨에 따라 비슷한 특성의 서비스에 대하여 동일한 규제환경을 조성하고 일관된 규제를 적용하기 위하여 방송과 통신정보의

수직적 경계를 허물고 네트워크와 콘텐츠 등 계층별로 서로 다른 규제를 적용하여야 하는 수평적 규제체계로 전환이 일어나고 있으며, 관련법규의 정비도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변화속에서 전파법을 아직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도 전파법에는 주파수의 사용계획, 분배, 무선국 개설과 관련 규정 등을 중심으로 하면서, 관련 법령 등을 정비해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일본의 경우에는 수평적 규제체계로의 전환을 염두에 두고 통합법을 제정하여 법체계를 개편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전파법은 남북한 대치상황에서 무선통신의 통제에서 출발하여 전파의 관리를 거쳐 진흥에 관한 사항까지 규정하기에 이르렀다. 전파는 방송·통신 이외의 공공안전·치안·국방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전파자원 공급·배분 및 혼신방지 등의 관리가 필요한 영역이다. 따라서 전파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를 위하여 전파법을 유지해 나가면서, 전파법의 체계와 내용을 시장기반의 관리방식이 확대되는 추세에 맞추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와함께 방송·통신의 융합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마련되고 있는 방송통신발전에 관한 기본법에서도 전파이용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1] 고남영 외 2인, 우리나라 주파수 정책 방향에 관한 고찰 한국해양정보통신학회, 98'추계종합학술대회지.1998

[2] 김익순 외 3명, U-City 환경에서 지능형 CCTV를 이용한 감시 시스템 구현, 한국전자통신학회 논문지 제3권 4호 P313

[3] 동아일보, 2003.2.1.P9

[4] 동아일보, 2003.2.28.P16

[5] 박승근 외 1인, 국내해양무선통신의 기술현황분석, 한국해양정보통신학회, 98'추계종합학술 대회지. 1998

[6] 김정년 외 2인, 소형어선과의 통신을 위한

TRS통신방식의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해양정보통신학회 논문지 제7권 1호 P26

[7] 신현식, 지진이 발생했을때의 정보통신의 역할, 한국해양정보통신학회 논문지 9권 1호,P334

[8] <http://www.mnpa.go.kr/b15body.htm>

[9] <http://crmo.mic.go.kr/data6>

[10] <http://seoul.koreapost.go.kr/hm/>

### 저 자 소 개

윤 형 득(Hyung-Duk Youn)

1999년 2월 여수대학교 전자통신공학과 졸업 (공학사)

2001년 2월 여수대학교 대학원 전자통신공학과 졸업(공학석사)

2005년 2월 여수대학교 대학원 전자통신공학과 박사과정 수료

2006년 12월 현재 ~ LG칼텍스정유(주) 근무

신 현 식 (Hyun-Sik Shin)



1969년 광운대학교 무선통신공학과 졸업 (공학사)

1980년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행정학석사)

1995년 경남대학교 대학원 졸업 (행정학박사)

현재 전남대학교 전자통신공학과 교수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대학원장  
 (사)한국해양정보통신학회, 명예 회장  
 (사)한국전자통신학회 회장  
 ※ 관심분야: 정보통신, 통신정책데이터통신